

	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5. 9. 14.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에서 대학 창업동아리 소속 또는 비소속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교수 또는 연구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의 벤처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 ② "예비창업자"라 함은 보육센터에 의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 입주 허가를 받아 대학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참여"라 함은 교수 등이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주요업무 및 기능) 보육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업체 선정 및 관리
2. 예산편성 및 지출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시설 및 장비 관리
5. 입주업체 기술지원 업무
6. 입주업체 자금지원 및 컨설팅 연계지원 업무
7. 입주업체와 관계기관과의 교류 업무
8.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활동
9. 창업동아리 지원 및 관리

제4조(지원사업) 보육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시설 · 설비 지원
 - 가. 창업보육 공간(사무실, 영업장)
 - 나. 각종 설비 및 장비
 - 다.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등)
 - 라. 기반시설(전화, 전기, 수도, 네트워크 전용선)
2. 기술지원
 - 가. 전담교수의 애로기술지도 및 상담

- 나.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 다. 대학연구기관과 연계 지원
- 라. 첨단기술 및 정보인프라 지원
- 마. 벤처창업 및 특허관련 지원

3. 경영지원

- 가. 세무, 회계, 마케팅 지도 및 연수
- 나. 입주업체 대외 홍보 지원
- 다. 구조조정자금 및 창업자금 연계 지원
-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담보 보증 추천
- 마. 입주업체 경영 진단과 지도, 경영정보 지원
- 바. 시장조사 보조 및 판로지원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보육센터는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한다.

- ① 센터장은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며,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전체 업무를 관장 한다.
- ② 업무형편과 규모에 따라 지원팀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지원팀장 및 기타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취업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 입주업체 선정 및 졸업 심사에 관한 사항
 - 3.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원)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학 자체 지원금,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보육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보육센터 운영손익) 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한 손익 중 50%는 학생의 창업 및 취업활동에 사용 하도록 하며, 그 나머지 손익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창업동아리운영) 창업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창업동아리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장 교수 등 벤처기업 참여

제11조(예비창업 승인) 교수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12조(참여허가) ① 교수 등이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하여 휴직, 겸직 또는 겸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별지서식 2에 의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겸직 또는 겸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 또는 이사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겸직 또는 겸임허가 신청서는 별지서식3과 같다.

④ 제1항의 겸직 또는 겸임허가를 받은 자의 기업 활동 시간은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5분의1(20%)에 한한다.

제13조(휴직, 겸직 또는 겸임허가 취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겸직 또는 겸임 허가를 받은 교수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사유와 현저히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2. 6개월 이내에 허가 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대학의 지원사항을 악용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총장 또는 센터장과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장에게 허가 취소를 건의한 경우

제14조(참여준비 및 출연 등) ①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예비창업자인 교수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에 따른 소속 업무의 공백에 대한 보완
2. 참여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분 출연에 관한 사항
3. 기타 참여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 협약서에 의한다.

제15조(기타 입주자에 대한 적용) 교수 등을 제외한 입주자에게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비밀유지) 학교와 입주자는 창업활동 및 입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퇴거조치) 총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창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자가 창업목적 달성단계에 도달하여 보육이 불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총장에게 퇴거명령을 건의한 때

3. 기타 법령 및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도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본인 및 관련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협약서에서 정하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작업결과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입주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비 창업 승인 신청서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교수로서 목포과학대학교가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비창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성 명 :
2. 소 속 : 과
3. 직 위 :
4. (벤처)기업명 :
5. 업 종 :
6. 사 유 :

년 월 일

학 과 장 : (인)
신 청 인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2]

추천서

1. 피추천인 인적사항

벤처기업명			
성명		소속	

2. 사업화 대상기술 또는 제품

기술 또는 제품명	
지적 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3. 추천의견(사업의지, 사업추진능력, 사업화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하여 추천의견을 간략히 기재)

--

상기인의 목포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창업보육센터

직 위 : 센터장

성명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3]

겸임(겸직) 허가 신청서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교수(연구원)로서 목포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겸임(겸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성 명 :
2. 소 속 : 과
3. 직 위 :
4. (벤처)기업명 :
5. 업 종 :
6.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 첨부 : 1. 창업보육센터장 추천서(별지서식2)